

문 의	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	과 장 강흠정 사무관 유철중	042-481-5879 042-481-5918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9년 3월 28일(목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특허취소신청,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이용 활발

- 하자 있는 특허의 조기 취소로 특허분쟁 예방 -

- 특허심판원(원장 박성준)은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,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.
 -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,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.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,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다.
 -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하여,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.
-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 278건(도입 1년차('17.3~'18.2) 134건, 2년차('18.3~'19.2) 144건)이다.
 - 현재까지 처리된 103건 중 25건(24%)은 특허취소됐고, 나머지는 특허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다.
 - 또한 특허취소된 25건 중 3건만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므로,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-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지만,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.
-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,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.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 249건(신청인의 90%), 중소기업 22건 순이다.
 -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 162건(피신청인의 58%), 중소기업 34건, 대기업 32건 순으로,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- 또한 산업별로 보면, 화학 118건(신청의 42%), 전기 45건,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신청되었다.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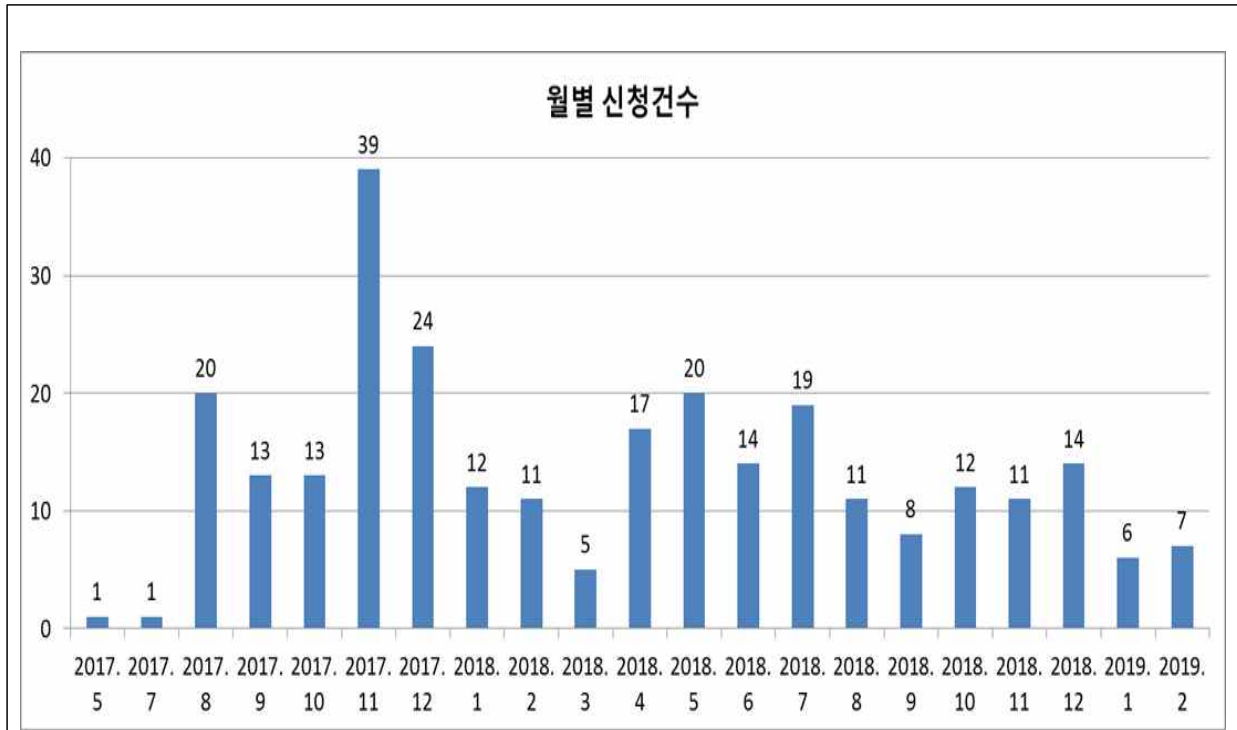
※ 붙임 : 특허취소신청 현황 분석 그래프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유철중 사무관(☎042-481-59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특허취소신청 현황 분석 그래프

1. 월별 신청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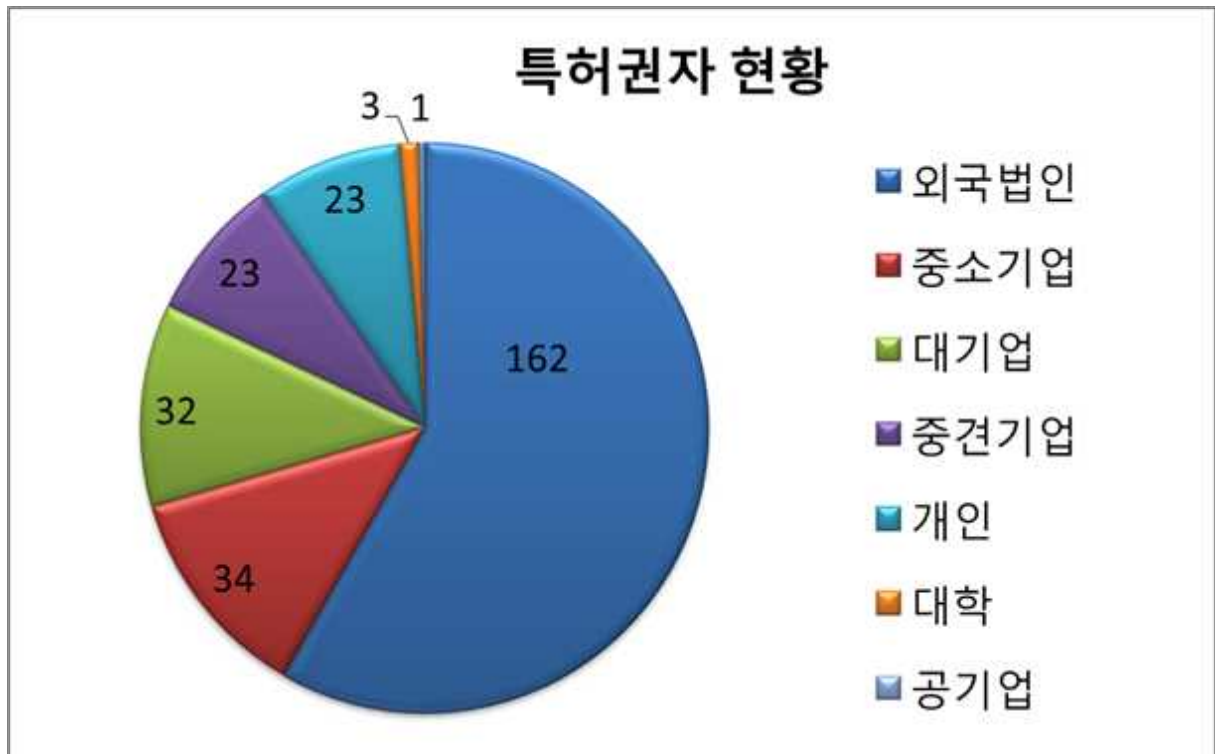
2. 처리결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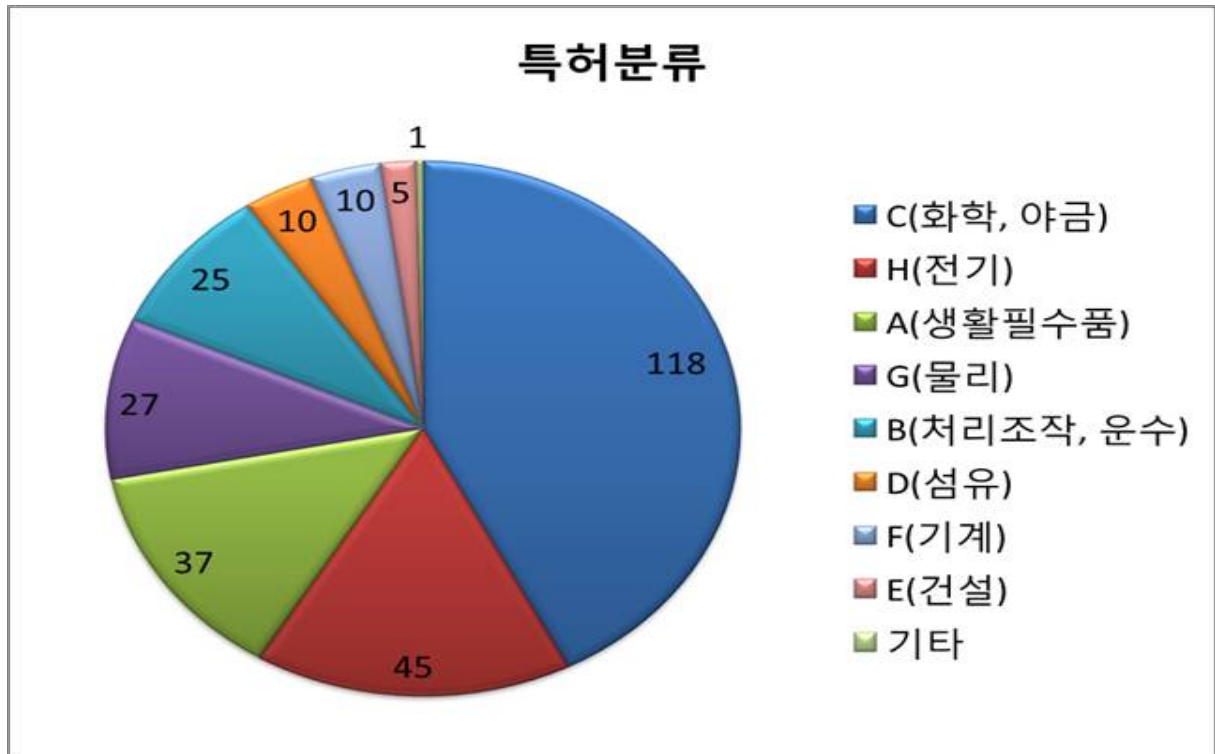
3. 신청인 현황



4. 피신청인(특허권자) 현황



5. 특허분류 현황



※ 특허취소 신청제도와 특허무효 심판제도 비교

구분	특허취소 신청제도	특허무효심판
신청인 적격	누구나	이해관계인 (누구나 - 구법 예외조항)
신청시기	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<u>6개월</u>	언제라도 가능 (등록일부터 등록공고 후 <u>3개월</u> - 구법 예외조항)
신청 이유	신규성, 진보성 (특허공보 · 간행물)	모든 무효 사유
심리 방식	서면심리	구술심리, 서면심리
정정 기회	원칙상 1회 (취소이유통지 이후)	답변서 제출기한,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 및 이유 제출시 등
비용	저렴	비쌈
불복 절차	법원 이후는 특허청이 수행	청구인이 수행